정치적 변수 [2020.04 ~ 2021.04]

- 1) 법안 제정 및 시행
- 2) 국가 금융 권위자(한국은행, 미국 연준 등)의 가상화폐 언급

### [주요 10대 사건 정리]

- 1) 2020/07/22 세법개정안
- 2) 2021/01/06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3) 2021/02/22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 비트코인 언급
- 4) 2021/02/2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비트코인 언급1
- 5) 2021/03/2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비트코인 언급2
- 6) 2021/03/25 특금법 시행
- 7) 2021/04/14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 비트코인 언급
- 8) 2021/04/15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비트코인 언급3
- 9) 2021/04/21 국회 가상화폐 고강도 대책 마련
- 10) 2021/04/22 은성수의 난

### 1. 2020/07/22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중, 가상자산에 대한 과제를 규정했음. 전체적으로 부자증세가 핵심인 개정안으로, 가상자산에도 세율 적용하게 됨

- -가상자산을 양도(매매•교환) 또는 대여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20%** 세율을 적용
- -적용 시기 : 2021년 10월 1일 거래부터
- -가상자산 거래 수익 연 1회 신고•납부 해야함. (현재의 해외주식 과세와 비슷)
- -다만,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책정하지만, 정작 주식에서 적용하는 손익 통산을 적용해주 지 않아서 논란, 즉 손실을 공제해주지 않는 세금 책정
- \*손익 통산 :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

기획 재정부는 현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상 열거돼 있지 않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 과세가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

# 2. 2021/01/06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20년 7월의 세법개정안을 수정하여 과세기준일을 3개월 늦췄음. 또한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 시가를 정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음

-과세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거래일 전,후 1개

월간 공시한 일(日)평균가격의 평균액임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에도 역시 세금이 붙음

# 3. 2021/02/22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 비트코인 언급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뉴욕타임스(NYT) 주최 '딜북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은 거래를 수행하기에 극도로 비효율적인 수단이며 그 거래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함

## 4. 2021/02/2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비트코인 언급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이상 급등이며, 단기간 급등했고, 태생적으로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이라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언급함,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지 이해하기 어렵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경고장을 날렸다"고 덧붙임

### 5. 2021/03/2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비트코인 언급2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출입기자들과 서면으로 진행한 '주요 현안에 대한 질답'에서 "암호자산은 지급수단이나 가치저장수단으로서 기능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또한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은 가격변동성이 높으며,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도입되면 특히 지급수 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임

### 6. 2021/03/25 특금법 시행

처음으로 법률로써 '가상자산'이 정의됨

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의 국제기구에서 규제안 논의가 활발해지자, 국내에서는 '특금법'(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

- -'가상자산'에 대해 규정
- -가장자산이 경제적 가치를 지녔다고 표기,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 (특금법 제2조 3호)
- -가상자산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의 **실거래자명의 보고의무**를 규정(제5조의2 제3호).
- 특금법은 가상자산에 대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 -가상자산 혹은 암호자산에 대해 그 기술적·경제적·기능적·법적인 분석없이 '실물자산'이 아닌 모든 것을 '가상자산'으로 일단 정의하고 예외를 열거적으로 규정
- -향후 적용범위와 실제 규제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음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과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오는 9월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완료해야 함 + 신고 기한을 넘겨 영업을 계속하는 가상화폐 사업자는 처벌대상 → '은성수의 난'과 연결

### 7. 2021/04/14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 비트코인 언급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은 워싱턴DC 경제클럽과의 원격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는 정말로 투기를 위한 수단"이라며 "결제수단으로서 활발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천년 동안 사람들은 금이 실제로 갖지 않은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왔다"며 가상화폐를 금에 비유하기도 함

### 8. 2021/04/15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비트코인 언급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암호자산(가상화폐)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제약이 아주 많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팩트(사실)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힘

### 9. 2021/04/21 국회 가상화폐 고강도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근 가상화폐 거래 과열 양상과 관련해 고강도 점검 및 대책 마련에 나서 겠다고 밝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가상화폐 과열 양상 속에서 각종 불법행위, 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는 지도부의 인식 공유가 있었다"며 "정 부가 이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

#### 10. 2021/04/22 은성수의 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에 대한 초강경 발언

- "특금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암호화폐 거래소가 200개라는데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될 것이다"
- "가상화폐 투자를 두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고 경고
- "이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고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

정부가 암호화폐 제도화에 부정적이라는 인식 전달과 함께 거래소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

### → 비트코인 가격 최고점 대비 약 -23% 하락

Ref) 2018/01/11 박상기의 난

2018년 1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정부안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 폐지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 발언을 한 사건, 당시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온 독단적인 발언

#### → 비트코인 가격 최고점 대비 약 -77% 하락